

관 세 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 (경유)

제목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보고(통보)

- 1. 우리 청은 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」(이하 "RCEP")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(붙임)을 마련하여 '22.5.18.부터 시행합니다.
- 2. 각 세관에서는 관내 수출입기업 등에 아래의 유의사항과 붙임 서식을 적극 안내·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RCEP 원산지신고서(권고서식) 활용 유의사항 >

- 가.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만이 작성할 수 있음
- 나. 이 서식의 작성 요령(OVERLEAF NOTES)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
- 다.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.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-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
- 라.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
- 붙 임 1.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(국문 작성요령. 한글파일)
 - 2.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(영문 작성요령, 워드파일)

관 세

수신자 1.기획재정부장관(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), 2.자원팀장, 5.전국세관 각 과(직속기관 포함), 6.한국관제단업인국제원산지정보원장

3.원산지검증과장, 4.해외통관지 3회의소회장(원산지증명센터장), 8.

전결 2022. 5. 18.

731

심성훈

행정사무관 -

김진선

협조자

관세행정관

시행 국제협력총괄과-1561

(2022. 5. 18.)

접수

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2동 13층 (둔산동) / www.customs.go.kr

전화번호 042-481-3206 팩스번호 042-481-3239 / sim307307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청렴한 당신, 행복한 국민, 신뢰받는 관세청